

2025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법률·세무 특강

농·어업인을 위한
상속법 가이드

2025. 6. 26.

법무법인 연
변호사 권오승



강사 소개



| 법무법인 연 구성원변호사 권오승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법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 전주지방법검찰청 검사

강의 순서

상속의 개념 이해하기

상속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 개념을 이해

상속 절차 파악하기

상속이 일어나는 과정과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

핵심 개념 익히기

유언, 법정상속, 유류분 등 상속 관련 핵심 개념을 이해

실생활(농어업) 상속 관련 문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

왜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할까?

상속 분쟁의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증가로 상속재산의 규모 증가
- 상속재산 규모 증가에 따른 가족 간 갈등 심화
- 부모세대 고령화로 인한 상속 문제의 현실화

상속 지식의 중요성

- 법적 지식 부족 시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증가
- 감정적 접근으로 인한 가족 관계 훼손 위험
- '돌아가신 뒤'가 아닌 '살아있는 지금' 준비해야 하는 문제

상속의 정의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과 채무가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의 기본 개념

-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법적 지위를 전부 이어받는 것을 의미

상속의 핵심 특징

- 포괄승계: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
- 피상속인의 법적 지위 전체를 이어받는 제도
- 채무 상속 가능성을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

상속의 종류

- 유언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상속 진행
- 법정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 진행

상속의 중요성

- 상속의 기본 개념 이해는 상속 문제 해결의 첫걸음
- 상속 절차와 법적 원칙 이해가 분쟁 예방에 필수적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

-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이전
-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짐
- 포괄적 승계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
- 상속재산은 상속인 공동 소유가 원칙

증여

- 생존 중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짐
- 지정된 재산만 이전 (채무는 승계되지 않음)
- 증여받은 재산은 수증자의 단독 소유가 됨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지만, 발생 시점과 법적 효과에 중요한 차이. 상속은 사망 시에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짐. 또한, 상속은 채무도 함께 승계되지만, 증여는 특정 재산만 이전.

증여에 의한 특별수익 개념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민법 제1008조에 근거한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도

1

제도의 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장치

2

법적 효과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처리

3

대법원 판례

대법원-2021다2300831 판결에서 인정된 원칙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관련 구체적 사례



특별수익 인정 사례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

ex) 6,200만원 증여, 혼수용 아파트 증여 등

대법원-97므513



특별수익 불인정 사례

자녀의 일부 변제, 감사 표시로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한 경우
피상속인의 애정과 배려에 기인한 금전 지급은 특별수익 불인정

ex) 생활비, 용돈, 학비 등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4706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와 지원 목적에 따라 달라짐.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중요시하며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을 검토.

상속 개시의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와 함께 시작되며, 이 시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

사망 시점

1

- 상속은 사망 순간부터 개시
- 사망 증명: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공적 서류 필요
- 상속재산 범위, 상속인 결정의 기준점

2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실종선고: 생사불명 상태의 부재자를 법원 선고로 사망 간주
- 일반적 실종: 5년 후 선고 가능
- 특별한 위난(전쟁, 선박 침몰 등) : 1년 후 선고 가능
-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 간주, 상속 개시

상속 개시 시점의 중요성

- 상속인 자격 결정의 기준
- 상속재산 범위 확정 기준



상속의 대상

상속되는 재산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 동산 (현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보험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상속 재산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 재산뿐만 아니라
권리나 채권 같은 무형 재산도 포함

상속되는 채무

- 대출금, 카드대금 등 금융 부채
- 보증책임 (피상속인이 보증인인 경우)
- 세금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채무도 상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상속의 기본 원칙: 포괄승계

포괄승계의 의미: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승계
- 재산만 선택적으로 상속 불가능
- 채무도 함께 상속됨

단순승인

- 아무런 조치 없을 시 자동 적용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무제한 승계
-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 의무 발생

한정승인

-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
- 상속 개시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필요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
-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상속 개시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필요

상속 관련 주의사항:

- 상속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 시 한정승인/상속포기 검토 필수
- 신청 기한(3개월) 경과 시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
- 단순승인 시 모든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부담

법정상속이란?

📖 정의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
-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

✅ 주요 특징

- 상속인과 상속 비율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짐
-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됨
-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상속인 결정

👤 배우자의 지위

-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짐
- 항상 상속인이 되며,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음

⚠️ 분쟁 가능성

- 상속분쟁의 대부분은 법정상속 과정에서 발생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주요 원인
- 법정상속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법정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가장 먼저 상속.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 역시 배우자와 함께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피상속인의 조카)가 대습상속. 배우자와 함께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 이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방계혈족이 단독 상속인.

상속순위는 가까운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와 국가귀속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될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연고자 제도와 국가귀속 제도를 두고 있음

◆ 특별연고자 상속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의미.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음.

◆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

1. 상속인 없음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
2. 법원이 심리하여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3. 분여 결정이 나면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음

상속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해야.

유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 됨.

◆ 국가귀속

상속인도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가 있어도 상속재산 전부를 분여받지 못한 경우,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이를 '무주재산의 국고 귀속'이라고 함.

◆ 국가귀속 절차

1. 상속인 부존재 확정 후 특별연고자 분여 기간(2개월) 경과
2.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청산 명령
3. 청산 후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

상속인의 결격 사유

상속인 결격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이는 상속에 있어서 도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로써 민법에 명확히 규정.

고의적 사망 초래

-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
-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
- 상기 행위의 미수범도 포함
- 가장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

유언 관련 범죄

-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유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강제한 자
- 피상속인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행위

결격의 효과

-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 가능
- 결격자 자신은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자동 적용
- 결격자가 상속재산 보유 시 다른 상속인들은 반환 청구 가능



상속인 관련 구체적 사례



태아 낙태와 상속결격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을 때 낙태 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
대법원 92다2127 판결



결격사유의 요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며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불필요
주관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중요 판례



자녀 상속포기 시 법적 효과

자녀 전부가 상속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기존 판례 변경

2015년 판결을 변경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
상속포기자의 의사 존중 원칙 확립

두 판례는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상속포기의 효과와 결격사유의 판단 기준이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의 상속분

법정 상속분의 기본 원칙

- 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
- 자녀들만 있는 경우: 자녀들이 균등하게 분할
-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상속 시: 배우자 1.5 : 다른 상속인 각 1

공동상속의 유형별 상속분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 1.5 : 자녀 1 (각각)
-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 1.5 : 부모 1 (각각)
- 배우자와 형제자매: 배우자 1.5 : 형제자매 1 (각각)

배우자 상속권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동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음 (민법 제1003조).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됨.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배우자의 상속 특징

-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짐
-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음
-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짐
- 모든 순위의 상속에 참여 가능

배우자는 민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상속인임.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공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다른 상속인보다 우대받는 것이 특징.

배우자 상속분 계산 예시

예시 1: 남편 사망,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총 상속재산: 3억 원
- 상속분 비율: 아내 1.5, 자녀 각 1 (총 3.5)
- 아내의 상속분: $3억 \times (1.5 \div 3.5) =$ 약 1억 2,860만 원
- 자녀 각각의 상속분: $3억 \times (1 \div 3.5) =$ 약 8,570만 원

대습상속의 개념

대습상속(代襲相續): 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선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시, 그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승계하는 제도 (민법 제1003조)

선 사망의 경우

- 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적용
- 직계비속은 원 상속인의 상속분에 한정하여 상속
- 상속 순위는 원 상속인의 순위를 승계

상속 포기와의 구별

- 상속 포기 시 대습상속 미적용
- 포기는 상속인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행위
- 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상속권 미이전



결격 사유 발생

- 상속인의 결격 사유: 고의적 피상속인 사망 초래 등
-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 지위 획득
- 결격자 본인은 상속권 상실

적용 사례: 손자녀의 조부모 재산 상속 -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의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음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소유 상태가 됨. 공동소유 상태 해소를 위해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함.

협의분할의 시작

- 상속인 전원 참여 필수 • 만장일치 원칙 적용 • 상속재산 분할 방법 논의

분할 방법 결정

- 현물 분할: 재산 그대로 분할 • 대상 분할: 일부 상속인이 재산 수령, 타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 • 환가 분할: 재산 매각 후 현금 분할

협의서 작성 및 등기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 필요 서류: 인감증명서 등 구비

협의분할 불성립 시 대응 : • 상속인 중 일인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가능

- 법원 판단 기준 :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생활 상태 등
- 법원 결정에 따른 분할 집행

협의분할 시 주의점



모든 상속인의 참여 필요

- 모든 상속인 참여가 필수적임, • 일부 상속인 불참 시 협의분할 무효
-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며, 이해상충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모든 상속재산 포함 여부 확인

- 일부 재산만 분할 가능하나 대상 재산 명확히 특정 필요
- 미발견 재산 추후 발견 시 별도 협의분할 진행해야 함.



상속세 신고 기한 고려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의무 존재. • 협의분할 지연과 무관하게 신고 기한 엄수 필요.



문서화 및 공증 필요

- 합의 내용 문서화 필수. • 가급적 공증 권장. • 추후 번복 시도로 인한 분쟁 예방 효과 있음.

협의분할은 상속인 자유의사에 기초하나, 성립된 협의분할은 법적 구속력 발생. 신중한 결정과 명확한 문서화가 중요함.

유언의 중요성

1. 유언의 법적 의미

- 유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최종적 의사표시
- 철회 및 변경: 생전에는 자유롭게 가능, 사망 시 확정적 효력 발생
- 법정상속 우선: 유효한 유언은 법정상속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제한 요소: 유류분 제도에 의한 일부 제한 가능

2. 유언의 현실적 필요성

- 분쟁 예방: 가족 간 상속 분쟁 방지의 효과적 수단
- 명확성 제공: 상속인 간 오해와 갈등 감소 효과
- 재산 배분 조정: 특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추가 재산 분배 가능
- 법정상속인 외 상속: 사실혼 배우자, 미입양 자녀 등에게 재산 상속 가능

3. 유언 작성 시 유의사항

- 법적 요건 준수: 유언 작성 시 법정 형식 요건 필수 충족
- 무효 위험: 형식적 요건 미충족 시 유언 무효 및 법정상속 진행
- 전문가 자문: 복잡한 재산 구조의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유언장

- 작성 요건: 전문, 본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작성
- 서명 및 날인 필수
- 장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 단점: 위조 가능성과 분실 위험 존재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방식

- 절차: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인
- 인증: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
- 장점: 내용이 비밀로 유지됨
- 단점: 절차가 복잡함



녹음 유언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

- 필수 녹음 내용: 유언자의 성명, 생년월일, 유언 일시와 장소
- 적용 상황: 자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활용
- 단점: 녹음 기기의 조작 또는 편집 가능성 존재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식

- 요건: 증인 3명 이상 참석 필요
- 절차: 구두로 유언 의사 표시 후 증인 중 1명이 필기
- 효력: 모든 증인이 서명·날인 필요
- 제한: 위급 상황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상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의사를 표시하고 공증받는 방식

- 절차: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필기한 후 공증
- 장점: 공신력이 가장 높아 분쟁 예방에 효과적
- 단점: 비용 발생 및 절차의 복잡성

자필증서 유언 작성법

자필증서 유언의 필수 요건

1. 전체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쓸 것
2. 작성 연월일을 기재할 것
3.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할 것
4. 날인(도장 찍기)할 것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 특히 일부만 자필이거나 타자로 작성한 경우, 날짜가 없는 경우,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무효

자필증서 유언 작성 시 주의사항

-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하면 무효
- 연필이나 지워지는 펜은 피할 것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
- 재산 목록은 명확하게 작성할 것
- 상속인의 이름과 관계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위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릴 것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분실되거나 위조될 위험. 또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법적 안정성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 능력 확인 및 작성 참여로 법적 효력이 확실함.
유언의 진위나 유효성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 최소화.



위조 방지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되며 공증 기관에 원본 보관. 위조·변조 위험 없음.
유언자 사망 후에도 공증 기관에서 확인 가능하여 분실 위험 없음.



법률 전문가의 조언

공증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조언 가능.
상속세, 유류분 등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 제공.



보존의 확실성

공증 기관에 원본 보관으로 분실·훼손 위험 없음.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의 유언 내용 확인 용이.

공정증서 유언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나 상속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 재산이 많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특히 권장됨.

유류분이란?

-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
- 피상속인이 재산을 타인에게 모두 주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 가능
- 목적: 유언의 자유와 법정상속인 보호 간의 균형 유지

유류분 권리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님
- 예: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형제에게 준 경우도 배우자/자녀는 유류분 청구 가능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예: 법정상속분 1억 원 → 유류분 5천만 원

유류분 침해와 반환청구

- 유언/증여로 유류분 침해 시 반환청구 가능
- 청구기한: 상속개시 인지 후 1년 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 유언 작성 시 유류분 고려하여 분쟁 예방 필요

유류분 계산 예시

● 사례 1: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유언한 경우

- 상황: 아버지가 재산 10억 원, 어머니와 자녀(아들, 딸) 있음
- 유언: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남김
- 법정상속분: 어머니 4억 원, 아들 3억 원, 딸 3억 원
- 유류분: 각 자녀 1.5억 원씩 (법정상속분의 1/2)
- 결과: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총 3억 원의 유류분 청구 가능

● 사례 2: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유언한 경우

- 상황: 어머니가 재산 5억 원, 남편과 아들 있음
- 유언: 모든 재산을 간병인에게 남김
- 법정상속분: 남편 3억 원, 아들 2억 원
- 유류분: 남편 1.5억 원, 아들 1억 원 (각각 법정상속분의 1/2)
- 결과: 남편과 아들은 간병인에게 총 2.5억 원 청구 가능

유류분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유언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게 함.

기여분의 개념과 인정 요건



기여분의 의의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



특별한 부양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적 간호
동거·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재산에 대한 특별 기여

무보수 헌신적 근로, 적극적 재산관리로 재산 증
가나 감소 방지
기여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기여분 비율 결정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한 기여분은 단순한 부양이나 도움이 아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함.

법원은 기여의 방법, 정도, 기간,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30%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

기여분 관련 구체적 사례

배우자의 기여분: 30% 인정

58년간 장갑 제조공장에서 헌신적 노동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상황에서도 가정 유지

파킨슨병, 치매 등 앓는 피상속인 사망까지 부양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1396

성인 자녀의 특별 부양: 기여분 인정

부양의무 존부나 순위와 무관하게 장기간 부모와 동거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 유지 부양 제공

부양의 시기·방법·정도 면에서 특별한 부양으로 기여분 인정

대법원-97므513

장남의 기여분: 10% 인정

고교시절부터 가업인 장갑 공장에서 근무

수십 년간 공장 실질적 운영 및 신제품 개발

피상속인 부동산 관리와 소송 대응 담당

서울가정법원-2021느합11396

후처의 기여분: 불인정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고 주장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지 않음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2014스4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 의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
- 활용 시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 서류: 한정승인 신청서와 상속재산 목록

상속포기

- 의미: 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활용 시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 서류: 상속포기 신청서
-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주의사항

- 기한 내 신청 필수: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 단순승인 결과: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함
- 공동상속인: 각자 따로 신청 가능
-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주의 - 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행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예: 상속부동산 매각, 상속예금 인출 등

기간 내 미선택

상속개시 인지 후 3개월 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음

법적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

부정행위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고의 누락

모든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결과 초래

• 법적 근거 및 해석

민법 제1026조: 위 세 가지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됨

중요: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까지 부담하게 됨

• 관련 판례 해석

상속재산의 은닉: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

부정소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

법정단순승인 관련 구체적 사례



채권 추심 사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한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

단순승인 간주 후 상속포기는 효력 없음
(대판 2009다84936)



상속재산 분할 사례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시 처분행위로 인정

이후 가정법원 상속포기신고는 효력 없음
(대판 82도2421)



부정소비 부정 사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경우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인정되지 않음
(대판 2003다6358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실무 가이드

상속 개시 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파악해야 함.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 보험, 채무 등 모든 재산 정보를 수집.

1

법원 신청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함.

2

3

4

재산과 채무 비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 채무가 많거나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채무가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고려.

결정 통지 및 후속 조치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관리 및 채무 변제 절차를 진행.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한 번 결정하면 취소하기 어렵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기 때문에,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어도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별한정승인 제도

정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 된 경우, 채무 사실 인지 일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한 제도

적용 요건

- 상속채무 존재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채무 금액이 아닌 채무 자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함

신청 기한

- 채무 존재 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연장 불가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 상속재산 목록 제출
- 채무 존재 사실 미인지의 정당한 사유 증명자료 제출

주의사항

-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요건 엄격
- 채무 존재 사실 미인지에 대한 중대한 과실 유무 법원의 엄격한 판단



농지 상속의 특수성

농지법의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불가
- 상속의 경우 예외적 소유 인정

상속 예외 규정

- 상속으로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만 제곱미터 (약 3,025평) 이내 소유 가능
-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적 사례

처분 의무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 초과 농지 소유 시 초과분 1년 이내 처분 필요
- 처분 의무 불이행 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주의사항

-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소유와 이용에 특별한 제한 존재
- 도시 거주 상속인이 농촌 농지 상속 시 어려움 발생 가능
- 농지 상속 시 농지법 규정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필요

농지 임대 가능성



상속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는 임대 가능합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권 유지할 수 있는 특별 규정입니다.

도시 상속인의 농지 관리 방안

- 임대차 계약 체결로 농지 활용도 높이기
- 전문 기관 위탁으로 효율적 관리 가능
- 임대 수익으로 재산가치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소유 상한 초과 농지는 공공기관에 위탁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특례 규정 적용됩니다.

임대 농지 주의사항

- 적법한 계약서 작성 필수
- 임대차 기간 명확히 설정
- 농지 용도 변경 불가 확인

농지 상속시 주의사항

농지 상속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입니다.

상속지분 확인 및 정리

상속인들의 정확한 지분 확인이 필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농지를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주의

상속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

상속 외 방법으로 취득 시에는 반드시 필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

명확한 지분 배분과 합의 내용을 문서화



관련 서류 준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



분묘기지권의 상속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격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상속 대상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로 승계

● 종손 우선의 원칙

종손에게 분묘 수호·관리권이 전속

● 종중에 의한 관리

종손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중에 귀속

● 존속기간

분묘가 존재하고 봉사를 계속하는 동안 권리가 존속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

금양임야의 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1정보(약 9,917m²) 이내로 제한됨

묘토인 농지의 정의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비용에 충당되는 농지
600평(약 1,983m²) 이내로 제한됨

인정 요건의 핵심

- 단순히 분묘 존재만으로는 불충분
- 토지의 실제 이용 목적과 관리상태가 중요
- 피상속인 사망 당시 기준으로 판단

승계의 특수성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인정
입증책임은 단독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어업권의 상속

어업권의 법적 성격

수산업법상 인정되는 부동산적 권리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부동산 규정이 준용.

부동산집행 방법으로 강제집행 대상

상속 가능 근거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재산권으로 상속 대상

민법 제1005조에 따른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원칙이 적용

수산업법상 규정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으로 이전 가능

법률상 명시적으로 상속을 통한 이전을 인정

어업권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자 중요한 재산권으로서 세대를 넘어 승계될 수 있음

어업권 상속의 법적 효과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어업권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등록 절차 필요

부동산 상속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업권 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함



경매 및 담보 가능

어업권은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과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어업권 소멸 시 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등록된 권리자

상속 분쟁 예방 방법

가족 간 대화

- 상속 계획을 가족들과 미리 논의
- 재산 상황과 상속 의향을 솔직하게 공유
-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 이유 설명

명확한 유언장 작성

-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 작성
- 가능하면 공정증서 유언 활용
- 재산 목록과 수혜자를 명확히 기재
- 전문가의 도움 활용

계획적인 생전 증여

- 연간 공제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 증여
- 세금 부담 감소 효과
- 유류분 침해 가능성에 주의

금융상품 활용

- 사망보험, 신탁 등으로 상속 절차 간소화
-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
- 상속 절차 없이 수령 가능

상속 분쟁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명확한 상속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족 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감사합니다

Q & A